

 신안산대학교	계약학과 운영 규정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규정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-4-25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18.11.02.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개정일자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2021.06.11</td>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책임부서/팀·계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P-TECH</td></tr> </table>	규정번호	2-4-25	제정일자	2018.11.02.	개정일자	2021.06.11	책임부서/팀·계	P-TECH
규정번호	2-4-25									
제정일자	2018.11.02.									
개정일자	2021.06.11									
책임부서/팀·계	P-TECH									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 제63조의 2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 및 범위)

-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“계약학과”라 함은 전문·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.
 - 2. “채용조건형”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.
 - 3. “재교육형”이라 함은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, 직무능력 향상, 전직(轉職)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며 본 대학에서 운영하는 재교육형의 일학습병행학과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“고숙련 일학습병행(P-Tech)”이라 함은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(산학일체형도제학교)훈련 수료자 및 현장실습선도기업에 재직중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융합형·최신기술 중심의 기술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(자격)과 대학 졸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과를 말한다.
 - 나. “대학 연계형 일학습병행”이라 함은 산업체 재직 1년 미만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(자격)과 함께 대학 졸업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학과를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(이하 “산업체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
 - 2.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(사업주 포함)이상인 사업체
 - 3.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
 - 4. 군부대(장교,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)
 - 5.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(이하 “사업주 단체”라 한다).

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

제3조(설치요건 및 학위과정)

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.

1. 산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(채용조건형)
 2. 산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(재교육형)
- ② 계약학과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4조(설치권역 및 계약의 체결)

- ①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'권역'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(시·도 단위) 내 또는 본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이내인 경우로 한다. 다만,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대학과 동일한 '권역'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함을 명시한 경우, '권역 내'의 계약으로 본다.
- 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,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 1. 계약학과의 명칭, 학위의 종류 및 정원
 2.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
 3.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
 4.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부담금(등록금)에 관한 사항
 5. 재학 중 퇴직·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
 6.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, 그 장소에 관한 사항
 7.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
 8.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
- ③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(전공) 또는 유사한 학과(전공)를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학과는 본 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산업체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, 관련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- ⑤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으로 권역제한 및 재직요건완화 등의 승인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5조(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·운영)

- ① 계약학과는 단동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.
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,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(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본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,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치·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)

- ① 계약학과의 설치·운영기간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되,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.
- ②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.
- ③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 다만, 산업체가 도산,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2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경비 및 부담)

-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에 의해 정하며,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공계약에 의한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(보조금)으로 충당한다.
- ② “채용조건형”인 경우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- ③ “재교육형”인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⑤ 졸업유보생의 경우 설치운영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, 모체학과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하며, 모체학과에서 미취득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다.
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
 2.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
 3.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
 4. 10학점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

제3장 학생선발

제8조(입학자격)

- ①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.
-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본 대학의 고숙련일학습병행(P-TECH)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 또는 재직예정자로 한다.
- ③ 매학기 재직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학생의 선발) 계약학과 학생의 선발은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,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.

제4장 수업 및 학사운영

제10조(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등)

-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, 산업체와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.
- ② 수업은 출석수업(Off-JT), 현장실습수업(OJT)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한다. 이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%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·자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계약학과에 한하여,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% 이내에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체계적 현장훈련 과정 등으로 편성 운영 할 수 있다.

제11조(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)

-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,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,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 인정원을 제출 받아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의 1 (성적평가 방법)

계약학과의 학업성적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<2021.06.11. 개정>

제12조(학사관리)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,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학사내규 등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와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휴학) 정부지원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는 사업기간과 교육훈련과정이 정해진 관계로 참여 학생의 휴학(병역복무에 의한 휴학 포함)은 허용되지 않는다.

제14조(제적) 본 대학 학칙 제24조에 해당하는 자 및 계약당사자인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또는 산업체를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.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5조(운영위원회)

-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단, 재교육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둔다.
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는 본 대학 교직원, 계약에 참여한 산업체 인사 및 학생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, 산업체 인사 및 학생의 구성비가 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,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
 - 2. 운영 계획 수립 및 변경,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
 - 3. 학교와 산업체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부담금(등록금)에 관한 사항
 - 5. 재학 중 퇴직·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,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규정(교육부 고시), 본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은 202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.